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30
----------	-------

발의연월일 : 2026. 1. 9.

발 의 자 : 장철민 · 김영환 · 민병덕
박용갑 · 장종태 · 허영
김교홍 · 김한규 · 김태선
진선미 · 이소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이미지, 음성 및 영상의 제작·게시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또한 선거시기 이전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선거운동 홍보물 일체에 인공지능 이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로 생활 전반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어 현행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경북 안동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선거운동 음향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 바 있음.

또한 선관위가 영상물등 제작의 모든 단계에 인공지능이 사용되어 인공지능 이용 영상물등을 일반 영상물등과 분류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사항을 일률적으로 통합하여 제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의 내용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의 허위 영상은 상시 금지하되, 선거운동 홍보물 제작 일반에 인공지능 사용을 허용하고, 인공지능 이용 표시 의무를 삭제하여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규제 체계로 통일하고자 함(안 제82조의8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허위의 사실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으로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0조제4항 중 “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을 “제82조의8을 위반한 자는”으로 한다.

제25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61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 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 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 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 다)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 ·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 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 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 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 용한 선거운동) <u>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 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 미지 또는 영상 등을 허위의 사실을 실제와 혼동시킬 목적 으로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u>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

③ (생 략) ④ <u>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82조의8을 위반한 자는</u> ----- ----- -----.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 ④ (생 략) ⑤ <u>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⑥ (생 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3. (생 략) 4. <u>제82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u>	⑥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3의3. (현행과 같음) 4. <u><삭 제></u>

<u>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u> <u>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u> <u>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u> 4의2. · 5. (생략) ④ ~ ⑫ (생략)	4의2. · 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
--	---